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1098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10981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가단1179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박지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9. 12.

판결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가단117978 판결

주문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1. 7. 30. 체결된 증여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¹⁾과 별지 2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2021. 7.경 체결된 증여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7. 30. 접수 D로 마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 7. 30. 접수 E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3,645,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45,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4, 15행 “별지2 목록 순번1 진공기를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민경, 판사 이장욱, 판사 이정현

별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따라 증여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